의안번호	제 269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2월 일 (제 305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1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9

제출연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 산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3, 2011.11.17.)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2,919명으로 함(안 제2조)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변동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11명⇒ 2,912명(증 1명)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11.18.~11.24.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18명"을 "2,9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911명"을 "2,91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에 따른 표준정원의 변동으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19명"과 같은 조 제2호 중 "2,912"명은 각각 21명을 감축하여 "2,898명", "2,891명"으로 하고, 201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911명**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912명**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231호, 2010.6.29, 일부개정]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 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 2011.7.21, 일부개정]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 <개정 2004.1.30>)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30>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신설 2004.1.30>

[별표 1] <개정 2011.7.21>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제1항 관련)

1. 시교육청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3×본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0.5/2+(0.0462×본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1.5/2}+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15×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0.5/2+(0.0339×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1.5/2}

2. 도교육청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8×본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0.5/2+(0.037×본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1.5/2}+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4×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0.5/2+(0.0454×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1.5/2}

비고

1. 본청정원 및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본청정원+(0.0000196×본청 관할 학생수)+(0.0000259×본청 관할 교원수)+(0.631×직속기관수)
   나.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지역교육청정원+(0.0000296×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0.0000326×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0.521×지역교육청 소속기관수)
2. 본청 관할 학생수 및 교원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수·교원수를 말하고, 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및 교원수는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의 학생수·교원수를 말하며, 각각 해당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본청정원은 본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원을 말하고, 지역교육청정원은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의 정원을 말하며, 각각 해당 연도의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학생수·교원수 변동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해당 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정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현정원의 ±0.1% 이내의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상·하한 편차 정원을 산출한 후,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정원이 상한 편차 정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 편차 정원을, 하한 편차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 편차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하며, 상·하한 편차 정원 범위에 있을 경우 그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3호, 2011.11.17.)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919	3,006	